

2025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화장품법의 이해

엠북 보건/의료

공부혁명!
mbook.kr

- ★ 스마트폰 수험총서
- ★ 3시간 완성, 암기코드 제공
- ★ 법, 영, 규칙, 별표 종합 정리
- ★ 최근 신설 및 개정 내용 반영

도서명 : 화장품법의 이해

ISBN : 979-11-7393-035-5

발간일 : 2025-06-13

형식 : 스마트폰용 전자책(PDF)

저자 : 김병연 교수

출판사 : 엠북

홈페이지 : <https://www.mbook.kr/>

이메일 : by4782@gmail.com

정가 : 24,000원



화장품법의 이해

[목차]

제1권 화장품법(p4)

제2권 개인정보보호법(p169~370)

[비고]

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

노란색 형광펜은 암기코드 등

검은색은 법

보라색은 시행령

갈색은 시행규칙

붉은색은 시행예정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제1권 화장품법

(이하 법)

[목차]

제1장 총칙(p5)

제2장 화장품의 제조/유통(p17)

제3장 화장품의 취급(p97)

제4장 감독(p125)

제5장 보칙(p149)

제6장 벌칙(p162)

[약어]

처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청장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은 화장품법 시행령

규칙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사용기한등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법 개정]

- 25년 8월 1일부터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관한 정부 인증 폐지(민간
체계로 전환)

제1장 총칙

1~2조

1. 목적

- 법은 화장품 제조, 수입, 판매, 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국민보건향상과 화장품 산업 발전에 기여
- 영은 법, 규칙은 법과 영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2. 정의

가. 화장품

- 인체를 청결/미화해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 건강

유지/증진을 위해,

-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
- 단, 약사법상 의약품 제외

나. 기능성화장품

1) 다음에 도움 주는 제품

- 피부 미백/주름개선
-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보호
- 모발 색상 변화/제거, 영양공급
- 피부/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방지/개선

2) 범위

- 피부에 멜라닌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해 기미/주근깨 생성을 억제해 피부 미백
-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색소의 색을 얇게 해 피부 미백
- 피부에 탄력을 주어 주름 완화/개선
- 강한 햇볕을 방지해 피부를 곱게 태움
-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보호
- 모발의 색상 변화(탈염/탈색 포함)
- 단, 일시적으로 변화시키는 제품 제외

- 체모 제거하는 기능
- 단,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제품 제외
- 탈모 완화
- 단,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 제외
- 여드름성 피부 완화
- 단,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
- 피부장벽(피부 가장 바깥 쪽 각질층 표피) 기능을 회복해 가려움 등 개선
- 틈살로 인한 붉은 선을 얹게 함

다. 맞춤형화장품

1) 제조/수입된 화장품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

내용물이나 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해 혼합

2) 제조/수입된 화장품 내용물 소분

- 단, 고형 비누 등 고체 형태 세안용

비누(이하 화장비누) 내용물을 단순 소분한
화장품 제외

라. 안전용기포장

- 만 5세 미만이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고안

마. 사용기한

-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고유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

바. 1차 포장

- 화장품 제조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

사. 2차 포장

- 1차 포장을 수용하는 1개 이상의 포장과 보호재 및 표시 목적으로 한 포장(첨부문서 등 포함)

아. 표시

- 화장품 용기/포장에 기재하는 문자, 숫자, 도형, 그림

자. 광고

- 라디오, TV, 신문, 잡지, 음성, 음향, 영상, 인터넷, 인쇄물, 간판 등에 의해,
- 화장품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림

차. 화장품제조업(이하 제조업)

- 화장품 전부/일부를 제조하는 영업
- 2차 포장이나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

카. 화장품책임판매업(이하 책임판매업)

- 화장품의 품질/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는 영업

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이하 맞춤형판매업)

-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파. 기타

1) 화장품**제**조업자(이하 제조업자)는 제조업
등록한 자

2)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이하 책임판매업자)는
책임판매업 등록한 자

3)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이하
맞춤형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한 자

4) 영업자는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맞춤형판매업자

5)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이하 관리사)**

- 맞춤형화장품 혼합/소분 등 품질/안전 관리
업무에 종사

6) 판매자는 소비자에 화장품을 직접 판매하는
자

7) **화장품 관련 분야는**

- 화학, 생물학, 화학공학, 생물공학, 미생물학,
생화학, 생명과학, 생명공학, 유전공학, 향장학,
화장품과학, 한의학, 한약학, 간호학, 간호과학,
건강간호학

8) **주민등록번호등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주민번호등)**

3. 영업의 종류

가. 제조업

- 1) 직접 제조
- 2) 위탁받아 제조
- 3) 포장(1차 포장만 해당)

나. 책임판매업

- 1) 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해 유통/판매
- 2) 제조업자에 위탁해 제조된 화장품 유통/판매
- 3) 수입 화장품 유통/판매
- 4) 수입대행형 거래를 위해 화장품 알선/수여

- 전자상거래만 해당

다. **맞춤형판매업**

1) 제조/수입된 화장품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 내용물이나 처장 고시 원료를 추가해 혼합한 화장품 판매

2) 제조/수입된 화장품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 판매

4. 9월 7일 **화장품의 날**

- 화장품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화장품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 제고
- 국가/지자체는 행사, 교육, 홍보, 법인/단체 활동 지원 가능

제2장 화장품의 제조·유통

3~6조

제1절 등록 및 신고

1. 개요

가. 영업의 등록

1) 제조업, 책임판매업을 하려면 처장에 등록
요

- 등록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 변경시도 같다

2) 제조업은 시설기준 갖춰야 함

- 일부 공정만 제조시 등은 시설 일부 불요

3) 책임판매업은

- 화장품 품질관리와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 구비

- 이를 관리할 책임판매관리자 둘 것

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1) **맞춤**형판매업 하려면 처장에 신고

-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 사항 변경시도 같다

2) 신고하려면 시설기준 갖추고 관리사 둘 것

2. 등록

가. 신청

1) 제조업

: 등록신청서(전자문서 포함)에 다음

서류(전자문서 포함) 첨부해 제조소 소재지
청장에 제출

a) 등록하려는 자(법인은 대표자)가

정신질환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나

제조업자로서 적합함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b) 등록하려는 자가 마약류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c) 시설 명세서

2) 책임판매업

: 등록신청서(전자문서 포함)에 다음
서류(전자문서 포함, 수입대행형 거래시
제출안함) 첨부해 책임판매업소 소재지 청장에
제출

- a) 화장품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에 관한 규정
- b)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확인 서류

나. 청장은

- 1)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확인(법인만 해당)
- 2) 등록요건 갖춘 때 제조업[책임판매업]
등록대장에 다음 사항을 적고,
제조업[책임판매업] 등록필증 발급